

거창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의안 번호	24
----------	----

제안연월일 : 1998년 7월 14일

제안자 : 이현영 의원 외 2

1. 제안이유

거창군의회위원회조례가 개정됨으로서, 의회에 설치되었던 상임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본 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상임위원회 관련 조항을 삭제 또는 수정하기 위함.

2. 주요골자

- 가. 의원의 의석배정시 의회운영위원회와의 협의조항 삭제 (안 제3조)
- 나. 의사일정 작성시 의회운영위원회와 사전협의조항 삭제 (안 제16조 2항)
- 다. 의안의 상임위원회 회부조항을 삭제하고, 본회의에서 심사·의결 원칙 추가 (안 제20조)
- 라. 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안의 타 위원회 회부시 의회운영위원회와의 협의조항 삭제 (안 제20조)
- 마. 예산안과 결산의 예비심사를 위한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조항 삭제 (안 제61조 및 제65조)
- 바. 의회경호 요청시 의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조항 삭제 (안 제73조)

3. 개정근거 : 거창군의회위원회조례 (개정된 조례)

거창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거창군의회회의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의원의 의석은 의장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이를 정한다.

제16조제2항을 삭제하고, 동조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의안의 회부) 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이를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한후 본회의에서 심사·의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군수가 제출하는 의안은 의원정수의 3배를 인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중에는 본회의의 보고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제20조의4중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를 “의장은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로 한다.

제6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1조(예산안의 심의) 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된 때에는 군수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후 의장은 이의 심사기간을 정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후 본회의에 부의한다.”로 한다.

제6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5조(결산의 심사) 의회에 결산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지체없이 이를 예결위원회에 회부하고 예결위원회의 심사가 끝난후 그 결과를 보고 받아 본회의에 부의한다.”로 한다.

제73조제1항중 “의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를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 (의석배정) ①	의원의 의석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때에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이를 정한다.	제3조 (의석배정) ①	의원의 의석은 의장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이를 정한다.	
제16조 (의사일정의 작성) ① (생략)	②의사일정의 작성에 있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16조 (의사일정의 작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삭제)	
	③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20조 (상임위원회 회부) ①	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이를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이 경우 군수가 제출하는 의안은 의원정수의 3배를 인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중에는 본회의의 보고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제20조 (의안의 회부) 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이를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한후 본회의에서 심사·의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군수가 제출하는 의안은 의원정수의 3배를 인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중에는 본회의의 보고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②의장은 안건이 어느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② (삭제)	

현행	개정안
<p>아니한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결정한다.</p>	
<p>제20조의4 (위원회의 제출의안) 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안은 그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p>	<p>제20조의4 (위원회의 제출의안) 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안은 그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장은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p>
<p>제61조 (예산안 심의) ①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되는 때에는 군수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후 의장은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p> <p>②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후 본회의에 부의한다.</p> <p>③ 의장은 예산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가 이</p>	<p>제61조 (예산안의 심의) 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된 때에는 군수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후 의장은 이의 심사기간을 정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후 본회의에 부의한다.</p>

